

울산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1나158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1나15840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가단11308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답

담당변호사 장심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명진, 이빛나

변론 종결2023. 6. 13.

판결 선고2023. 8. 22.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1가단11308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4. 16. 체결된 증여계약은 8,961,4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61,4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2. 3. 27. C과 변제기 2017. 3. 31., 이자 연 27.9%로 정하여 3,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하였다.

나. D는 2017.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되었다.

다.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차전125150호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1. 4. 29. 'C은 원고에게 8,863,439원 및 그중 2,982,042원에 대하여 2021.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라. C은 2006. 5. 1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21. 4. 16.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배우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증여를 받은 2021. 4. 16. 근저당권자 E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58,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21. 5. 3. 근저당권자 F조합, 채무자 G,

채권최고액 163,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21. 5. 3.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인 2021. 6. 4.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원금 2,982,042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979,412원 등 합계 8,961,45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 당시 피보전채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원금 및 이자 8,863,439원을 보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8, 9, 1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F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C은 적극재산으로 예금 512,319원과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책임재산은 시세 155,000,000원에서 F조합에 물상담보로 제공된 채무자 G의 48,138,587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공제한 106,861,413원이 되고, 소극재산으로 원고를 비롯한 15명의 채권자에 대하여 116,856,100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소극재산 116,856,100원이 적극재산 합계 107,373,732원(= 512,319원 + 106,861,413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가 된다. 나아가 이 사건 증여는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증여받은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2) 피고는 C이 피고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여가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C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7. 12. 14. 울산지방법원 2017개회11722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4년간에 걸쳐 월변제액을 납부하였으므로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없고, 피고 또한 C의 채무상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증여받은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7. 12. 1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2021. 3. 25. 변제계획의 인가를 받지 못한 채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채무자 C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가 증여받을 당시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21. 5. 3.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F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그 피담보채무액이 48,138,587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액반환만을 구할 수 있다.

2)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55,000,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위 금액과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사해행위 당시 공동담보가액은 피담보채무액 48,138,587원을 공제한 106,861,413원이 된다.

3)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인 2021. 6. 4.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원금 2,982,042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979,412원 등 합계 8,961,454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가액반환 범위가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은 8,961,45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8,961,45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용철

판사송인철

판사오수진

별지